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64 발의연월일: 2024. 10. 11.

발 의 자:민병덕・이기헌・이상식

정진욱 · 김현정 · 박민규

이광희 · 안규백 · 김재원

이언주 • 윤후덕 • 윤준병

박홍근 • 서미화 • 이강일

황운하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로 진행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·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공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의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발의 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 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4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단서 중 "대통령령으로"를 "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10조의4에 따라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규임 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약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9조(계약의 방법) ① 일반재산	제29조(계약의 방법) ①		
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			
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			
부쳐야 한다. 다만, <u>대통령령으</u>	<u></u> 「상가건물		
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	임대차보호법」 제10조의4에 따		
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	라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금을		
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, 증권	지급받기 위하여 신규임차인을		
의 경우에는 「자본시장과 금	주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		
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			
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			
으로 하며, 이 법 제4조제1항제			
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			
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			
을 준용한다.	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